

2008년도 인문학진흥
인문저술지원사업 신청요강

2008. 06

한국학술진흥재단

- 차 례 -

I. 사업목적 및 지원방향	1
1. 사업목적	1
2. 지원방향	1
II. 사업내용	1
1. 지원 분야 및 대상	1
2. 지원 예산	2
3. 지원 규모 및 기간	2
III. 신청	2
1. 신청자격	2
2. 신청기간	3
3. 신청방법	3
4. 온라인 신청절차.....	3
5. 신청 및 참여제한	6
IV. 심사 및 선정	7
1. 심사절차	7
2. 심사방법 및 내용	7
3. 선정확정 및 협약체결	8
V. 연구비 지급 및 관리	8
1. 연구비 지급	8
2. 연구비 관리	9
VI. 보고서 제출 및 평가	9
1. 단계보고서 제출 및 평가	9
2. 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10
3. 연구결과발표물 제출	11
VII. 간접연구비 지원	13
VIII. 기타사항	13
※ 붙임 1. 저술계획서 2. 연구이력 소개서 3. 대표 연구업적 요약문	

I. 사업목적 및 지원방향

1. 사업목적

- 오랜 연구와 경험을 축적한 우수중견 인문학자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연구성과의 저술발간을 장기적으로 지원
- 저술출판을 통해 연구성과의 소통성을 제고하여 한국 인문학의 수준 향상에 기여

2. 지원방향

- 수시접수체제 도입으로 창의적 연구지원
- 장문의 연구계획서 중심의 심사를 탈피하여 창의적 연구 지원
- 긴 호흡이 필요한 인문학 특성을 반영하여 장기적 안목으로 다년간 지원
- 인문학과 사회의 소통, 학문간 소통 등을 강조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인문학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정
- 원고료 성격의 지원으로 정산을 간소화 하고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 보장

II. 사업내용

1. 지원분야 및 대상

가. 지원분야 : 인문학 분야

※ 기초학문으로서 인문학적 성격의 사회과학, 예술, 체육, 복합학 분야 지원가능

나. 지원대상

-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 최근 5년간 5편 이상의 연구업적이 있고
 - 연구 및 저술 역량이 우수한 연구자로서 인문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저술을 준비 중인 연구자

※ 해당 저술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함

- 기발표 내용이 30% 이상 포함된 저술 계획 제외 (최종저서에도 적용)
- 교과서, 개설서 성격의 저술 제외

다. 지원형태 : 단독연구

2. 지원예산 : 2,800백만원

- 계속과제 : 1,500백만원
- 신규과제 : 1,300백만원
 - 상반기 : 700백만원
 - 하반기 : 600백만원

※ 단, 신청현황에 따라 선정과제 수 조정 가능

3. 지원규모 및 기간

가. 지원규모 : 과제당 연 10백만원

※ 별도의 출판비 지원 없음

나. 지원기간 : 3년

- 3년간 지원하여 1종 이상의 저술결과물(200p이상, 저술분량 제한 없음)을 출판 도서로 제출(국문 또는 영문)

Ⅲ. 신청

1.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연구 실적이 있는 연구자에 한함

- 2003년 1월 1일부터 온라인신청 마감일 현재까지 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국제 학술지(A&HCI, SSCI 등) 게재논문, 등록 완료된 국제특허 또는 전문학술 저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등의 연구 실적이 5편 이상이어야 함

※ 단독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2편으로, 공동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1편으로 산정함

※ 단, 상기 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의 연구자로서, 상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실적을 대표업적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심사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를 온라인 신청시 입력하여야 함

※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제 5 조 (지급대상) 연구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의 대학(대학부설연구소를 포함한다)또는 그 소속교원
2. 국내외의 학술연구기관·단체 또는 그 소속연구자
3.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3조 및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예술활동을 지원받는 과학자·예술가 또는 그 단체
4. 대학의 시간강사
5. 국내외의 대학 등의 기관에서 연수 중인 자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6. 학술연구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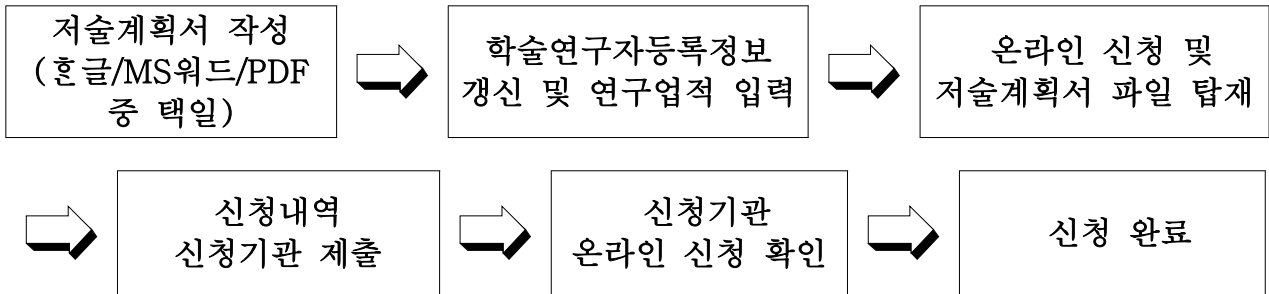
2.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 및 연 2회 선정·발표

구분	신청기간	연구개시
2008년 2차	2008. 4. 1.(화) 14:00 ~ 2008. 9. 30.(화) 18:00	2008. 12. 1.
2009년 1차	2008.10. 1.(수) 09:00 ~ 2009. 3. 31.(화) 18:00	2009. 6. 1.

※ 금년도 신청마감일 이후(2008.10.1)부터 차년도 사업 계획 확정까지(2009.3 예정)의 신청 접수 과제는 2008년도 신청 및 심사기준을 적용, 2009년도 예산으로 지원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4. 온라인 신청절차



가. 온라인 신청 전

- 1) 재단 홈페이지 「국가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의 정보(연구업적 등)를 입력, 수정하여야 함(신청 후 추가 등록한 정보는 반영되지 않음.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하여야 함)
- 2) 온라인 신청시 신청서류 파일을 동시에 탑재하여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 전에 「호글」, 「MS워드」, 「PDF」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재단 소정 양식으로 미리 작성 하여야함 (PDF 파일로 탑재하는 것을 권장함)
- 3) 시간강사는 연구지원 신청기관을 정하여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와 연구비 신청과 선정 후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 신청과 선정 후 원활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4)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학술단체(학회 등) 회원자격으로 연구비 신청하는 것을 제한함. 단, 부득이 신청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학술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온라인 신청시 그 사유를 입력)
- 5) 신청 과제에의 전공분야를 재단 “연구분야 분류표”(재단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학술정보→연구지원정보→연구분야 분류표)에서 사전에 확인하여 온라인 신청시 선택·입력하여야 함

나. 온라인 신청

- 1) 연구지원 신청에 결격사유가 없는 연구자로 "온라인 신청 사항"을 입력하고, "저술계획서(자유양식)" 및 기타 제출 파일을 작성하여 탑재하여야 하며, 접수번호는 온라인 신청완료 후에만 볼 수 있음
 - ① “저술계획서” (출판계획 포함) [붙임1]
 - ※ 저술계획서는 A4용지 5~10매 내외로 작성(매수에서 참고문헌 제외)
 - ※ 저술완성분량을 예상하여 제시하여야 함(200p 이상, 제한없음)

- 저술완성원고 제출 시 당초계획분량을 초과한 경우는 무방하나, 부족할 경우 -10% 범위에 한하여 오차 허용

② “연구이력 소개서” [붙임2]

③ “대표연구업적요약문” [붙임3]

※ 5편의 대표연구업적 중 2편은 전문으로 제출함

④ “연구업적목록” : 학술연구자정보에 입력된 사항으로 함. 따라서 온라인 신청전에 필히 갱신하여야 하며 신청 후 추가 등록한 정보는 반영되지 않음

※ ①~③은 hwp, doc 또는 pdf 파일로 각각 작성하여 탑재함

※ 입력사항 및 제출서류 누락에 따른 불이익(요건 탈락 및 감점 등)이 있을 수 있음

2)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부득이 학술단체(학회 등) 회원자격으로 신청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학술단체의 동의를 받고 온라인 신청시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함

3) 대표업적은 “Ⅲ-1.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연구실적 중 5편만 선택하여야 함. 단, 재단 등재(후보)학술지, A&HCI급·SSCI급 등의 국제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의 연구자로서, 실적을 대표업적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심사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를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에서 입력하여야 함

4) 온라인 신청기간 중에는 입력한 신청내용과 계획서 파일의 교체가 가능하나 마감일 종료 후에는 교체·수정이 불가능함

※ 온라인 신청기간 중 입력내용을 교체·수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완료”버튼을 다시 클릭함

5) 온라인 신청 및 저술계획서 파일을 탑재하고 접수번호를 부여받았을 경우에 신청이 완료된 것이며, 접수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과제는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온라인 신청 후

1) 연구자

-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력내용(계획서 포함) 1부를 출력하여 신청기관의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에 제출

2) 신청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

- 신청기관의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는 연구책임자로부터 신청 입력내용

(저술계획서, 연구이력소개서, 대표연구업적요약문 포함) 1부를 접수하여 내용 확인 후 아래의 기한 내에 온라인 신청기관 확인을 완료해야하며, 만일 확인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과제로 인정되지 않음

- 신청기관 온라인 확인 기간
 - 2008년 2차 : 2008.10.1(수) 14:00 ~ 10.2(목) 18:00
 - 2009년 1차 : 2009. 4.1(수) 14:00 ~ 4. 2(목) 18:00
- 해당 중앙관리부서는 제출 받은 신청내역 1부를 출력하여 자체 보관하여야 함

5. 신청 및 참여 제한

가. 신청 제한

- 본 인문저술지원사업 내에서는 각 신청 기간별 1인 1과제에 한해 신청할 수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를 지원 받고 해당 연구과제의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각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 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각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
- 각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연구결과 논문평가에서 D급으로 평가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단, 1999년 이전 지원과제는 D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나. 참여 제한

- 본 인문저술지원사업 내에서는 1인 1과제에 한해 참여할 수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는 1인이 연 2과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함.
 -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연구기간만료일이 2008. 12. 31 이전인 과제는 참여 제한 과제수에 포함되지 않음

- ※ 2009년 1차(08. 10. 1~09. 3. 31)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구기간만료일이 2009. 12. 31 이전인 과제는 참여제한 과제수에 포함되지 않음
-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9. 1. 1. 이후인 과제라도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정책개발 연구과제,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과제, 우수논문사후지원과제, 우수학자지원(인문사회 및 기초과학분야)과제, 박사논문출판지원과제, 사전편찬 교부 정책과제, 재단 정책과제는 연구참여 제한과제수에 포함되지 않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20조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는 제재조치의 내용(범위 및 기간 등)에 따라 참여를 제한함

IV. 심사 및 선정

1. 심사절차

단계별	심사구분		심사내용	비고
1단계	요건심사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재단
2단계	전공 심사	온라인전문	연구업적 및 저술계획서 심사	전공심사단
3단계		패널집중		
4단계	종합심사		선정과제 확정	종합심사단

2. 심사방법 및 내용

가. 제 1 단계 : 요건심사

- 심사방법 :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 심사
- 심사내용 : 신청요강에 의한 요건 충족여부 등

나. 제 2,3 단계 : 전공심사

- 심사방법 : 전문가 집중심사 (온라인전문심사 + PM 패널집중 심사)
- ※ 필요시 외부 전문가 심사 참여 가능
- 심사내용 : 연구업적 및 저술계획서의 우수성 등
- 심사항목 및 배점

구 분	심사항목	측정지표		배점
저술계획	독창성	· 연구주제의 창의성 및 독자성 · 저술 규모의 적정성	20	40
	학문발전 공헌도	· 학문의 파급효과 · 해당분야연구의 선도적 역할	20	
연구역량	연구역량	· 최근 5년간 연구활동의 질적 수준	50	60
	주제 관련성	· 연구역량과 주제와의 관련성	10	
계			100	

※ 상기 심사항목 및 내용은 학문분야의 특성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심사자에게 공정한 심사의 책무 등을 서약 받아 심사자의 책임성 고취

다. 제 4 단계 : 종합심사

- 심사주관 : 종합심의위원회
- 심사내용
 - 전공심사 결과 검토
 - 예산배정 및 선정기준 결정
 - 최종 선정과제 확정

3. 선정확정 및 협약체결

- 가. 예비선정 :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예비선정과제를 공개하여 여
타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지원 등을 방지
- 나. 최종선정 : 예비선정 기간 중 중복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선정
- 다. 협약체결 : 재단(이사장), 연구자, 연구기관(장) 3자간 연구비 협약 체결

V. 연구비 지급 및 관리

1. 연구비 지급

가. 지급방법

-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을 경유하여 지급

나. 지급시기 : 지원과제 선정 확정 후 단계별 지급

선정확정 후	1단계 평가 후 (연구개시후 10개월)	2단계평가 후 (연구개시 후 2년 10개월)
협약체결후	계속지원 결정시	출판적합 판정시
10백만원	10백만원	10백만원

2. 연구비 관리

- 연구비는 반드시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이 중앙관리하여야 함. 단,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일정기간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 연구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았을 때
 - 연구진행 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였을 때
 -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및 표절 등으로 하였을 때
 - 기타 연구자가 연구 수행에 있어서 연구비 관리지침(저술계획서 포함) 내용을 크게 위반하였을 때
-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은 과제별 협약 체결 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함

VI. 보고서 제출 및 평가

1. 단계보고서 제출 및 평가

가. 1단계 보고서 제출 및 평가

- 1) 제출시기 : 연구개시 후 10개월 이내
- 2)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3) 제출자료 : 단계보고서 제출(양식 추후 통보)
- 4) 평가내용
 - 1단계 저술 진행상황 및 2단계 연구추진계획
 - 연구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및 타당성 검토
- 5) 평가결과 : 계속지원 여부 결정 및 차년도 연구비 조정

나. 2단계 보고서 제출 및 평가

- 1) 제출시기 : 연구개시 후 2년 10개월 이내
- 2)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3) 제출자료 : 단계보고서, 80% 이상 완성 원고
- 4) 평가결과 : 출판 적합 여부 평가
 - 출판적합 : 3년차 연구비를 지급하고 출판을 추진케 함
 - 출판유보 : 6개월간의 수정 기간을 주어 재평가함
 - 출판부적합 : 3년차 원고료 지급 중지, 향후 5년간 교육과학기술부 학술 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 신청을 제한함

2. 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가. 결과보고서 제출

- 1)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 2) 제출방법 : 온라인 및 우편 제출
- 3) 제출자료
 - ① 저술완성원고 (연구자 파일 탑재)
 - ② 저술 요약문(국·영문) 1부 (연구자 온라인 입력)
 - ※ 국문 연구요약문은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 제출
 - ③ 저술결과 개요보고서 (연구자 온라인 입력)

④ 연구비 집행정산 내역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 온라인 입력)

※ 연구비는 원고료로 지급하였으므로 세부 정산은 생략함

⑤ 출판계약서 사본 1부

※ 온라인 탑재 및 연구비 중앙 관리 부서를 통해 재단에 우편제출

※ 저서 출판을 위한 출판사 선정은 저자의 선택에 위임

※ 연구수행과정에서 획득한 통계,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등 각종 자료는 연구수행기관에서 보존하여야 하며 재단의 사용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나. 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

- 당초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비를 환수하고 향후 5년간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 신청을 제한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및 표절 등으로 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재단 관리지침 및 협약에 의거한 제재 및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함

3. 최종연구결과 발표물 제출

가.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나. 제출자료 : 출판 완료 도서 2부

다. 제출방법 : 온라인 및 연구비 중앙 관리 부서를 통한 제출

라. 연구결과 출판물에 대한 사사표기

- 연구결과 출판물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표기하여야 함

연구결과발표 시, 반드시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국문표기 시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812-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KRF-2008-812-과제번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슈퍼컴퓨터를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국문표기 시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8-812-과제번호) 또한 이 연구의 주요 계산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무상으로 제공한 슈퍼 컴퓨팅 자원을 이용하여 수행되었음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KRF-2008-812-과제번호), in which main calculations were performed by using the supercomputing resource of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KISTI)

마. 연구결과 출판물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

-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최종연구결과물을 미제출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기간 종료 2년 후부터 5년간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비 지원 신청을 제한함
- 상기 항의 경우,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연구자의 소명서 제출 및 연구수행 전반에 대한 소정의 별도 평가를 통해 연구비 신청제한 조치를 면할 수 있음
- 연구비 신청제한 기간 중에도, 연구자가 본 사업에서 정한 최종연구결과물 제출에 관한 소정의 책무를 완수하였을 경우, 연구자 소속기관장의 요청 공문에 의하여 신청제한을 해제할 수 있음

바. 연구결과 사후 관리

- 연구결과 발표물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활용함
 - e-book 제작을 추진함
 - 연구현황, 통계 등의 제공
- 연구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등 유형적 결과물 및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 재단은 연구자로부터 연구성과물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아 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음. 단, 재단은 일반인의 이용방법

및 조건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있음

- 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과제 수행과정 또는 연구종료후 당해 과제의 연구내용 및 연구성과물이 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연구실적물 심사 결과 표절로 판명되어 징계조치를 요구받거나 징계를 당한 경우 5년간 연구비 신청 제한

사. 연구성과 Follow-up 시스템

- 연구자는 연구진행부터 연구결과 발표물 제출 후에라도 재단 홈페이지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성과물(논문, 저서, 보고서, 특허, 기술, 발명, 세계인명사전 등재, 언론보도, 인력양성 실적 등)을 게재하여야 하고, 재단의 사용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성과물을 재단에 송부함

VII. 간접연구비 지원 : 지원 대상이 아님

VIII. 기타사항

- 심사 학문분야는 재단의 “연구분야 분류표”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선택하여야 함
- 신청시 부정확한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입력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 신청자(연구책임자)는 심사결과 발표 후 일정기간 해당 과제의 심사결과와 관련된 심사의견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단, 타 신청자의 연구계획서 및 심사내용 등 제반 사항은 비공개 대상임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의거, 동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아연구에 해당되는 연구과제의 경우, 해당 연구기관은 배아 연구기관으로의 등록과 해당 연구계획에 대한 승인을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얻어야 함에 따라,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배아 연구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문 의 처

(137-170)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릉로 25 한국학술진흥재단 (<http://www.krf.or.kr>)

◦ 사업관련 문의

- 인문학지원팀 Tel (02) 3460-5576 Fax (02) 3460-5589

◦ 전산관련 문의 (회원가입, 학술연구자 정보 등록 등)

- 학술정보팀 Tel (02) 3460-5545~8 Fax (02) 3460-5549

【저술계획서 파일 탑재시 유의사항】

※ 저술계획서 파일을 탑재하시기 전에 인쇄 미리보기에서 아래의 "잘못된 사례"와 같이 한 화면에 2쪽 이상이 보일 경우에는 **인쇄방식을 자동인쇄로 설정한 후 화면에 1쪽만 보이도록 하여 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인쇄

기본 | 확장

인쇄 범위

☒ 문서 전체(I) (연결된 문서 포함)

☐ 현재 문서(B) ☐ 현재 쪽(C) ☐ 현재 구역(G)

☐ 현재부터(H) ☐ 현재까지(E) ☐ 선택한 쪽만(S)

☐ 일부분(B): 쪽 번호나 범위를 실표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예) 1, 3, 5-7

여러 매 인쇄

인쇄 매수(N): ☒ 한 부씩 찍기(Q)

인쇄 방식(M)

자동 인쇄 공급 용지(Z): **프린터 설정에 따름**

☐ 머리말 자동 인쇄(U) ☐ 꼬리말 자동 인쇄(A)

☐ 인쇄 결과를 파일로 **저장된 사례**

프린터

인쇄

기본 | 확장

인쇄 범위

☒ 문서 전체(I) (연결된 문서 포함)

☐ 현재 문서(B) ☐ 현재 쪽(C) ☐ 현재 구역(G)

☐ 현재부터(H) ☐ 현재까지(E) ☐ 선택한 쪽만(S)

☐ 일부분(B): 쪽 번호나 범위를 실표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예) 1, 3, 5-7

여러 매 인쇄

인쇄 매수(N): ☒ 한 부씩 찍기(Q)

인쇄 방식(M)

2쪽씩 모아 찍기 공급 용지(Z): **프린터 설정에 따름**

☐ 머리말 자동 인쇄(U) ☐ 꼬리말 자동 인쇄(A)

☐ 인쇄 결과를 파일로 **잘못된 사례**

프린터

잘된 사례

【문임 2】

연구기간	선 택
1년 과제	☐
2년 과제	☐
3년 과제	☐

연구 계획서

(2007년도 신진교수연구지원사업)

연구 과제명	국 문	※연구과제명은 온라인 신청시 입력한 과제명과 동일하여야 합니다(참고 후 삭제하고 작성하십시오)
영 문		

I. 연구계획

- ※ 아래 사항은 참고하신 후 삭제하고 작성 하십시오.
- ※ I. 연구계획은 "심사항목 및 측정지표"를 참조하시어 연구주제 및 연구내용에 맞게 자유 형식으로 기술함
 - ※ 다년과제 또는 해외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의 필요성을 추가 기술함
 - ※ 연구계획서(연구계획, 연구추진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 포함)는 15매 이내로 작성함. 단, 참고문헌 목록은 15매에 계상하지 않음.
 - ※ 연구과제의 심사는 무기명실시(Bind Title)로 진행됩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자 및 연구 보조원을 알아 볼 수 있는 소속, 성명 등을 기재하지 마십시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참고문헌 목록에 있어 본인이 저자인 경우는 본인의 표기는 무방함

잘못된 사례

【문임 2】

연구기간	선 택
1년 과제	☐
2년 과제	☐
3년 과제	☐

연구 계획서

(2007년도 신진교수연구지원사업)

연구 과제명	국 문	※연구과제명은 온라인 신청시 입력한 과제명과 동일하여야 합니다(참고 후 삭제하고 작성하십시오)
영 문		

I. 연구계획

- ※ 아래 사항은 참고하신 후 삭제하고 작성 하십시오.
- ※ I. 연구계획은 "심사항목 및 측정지표"를 참조하시어 연구주제 및 연구내용에 맞게 자유 형식으로 기술함
 - ※ 다년과제 또는 해외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의 필요성을 추가 기술함
 - ※ 연구계획서(연구계획, 연구추진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 포함)는 15매 이내로 작성함. 단, 참고문헌 목록은 15매에 계상하지 않음.
 - ※ 연구과제의 심사는 무기명실시(Bind Title)로 진행됩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자 및 연구 보조원을 알아 볼 수 있는 소속, 성명 등을 기재하지 마십시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참고문헌 목록에 있어 본인이 저자인 경우는 본인의 표기는 무방함

II. 연구추진계획

※ 이면제에서 경우에는 연구필요 자료 확보 추진계획을 작성하십시오

분 월	연구추진내용	비 고
1년가		
2007. 7		
8		
9		
10		
11		
12		
2008. 1		
2		
3		
4		
5		
6		

※ 신청기간에 따라 현상별로 작성

[MS Word]

인쇄

프린터: HP LaserJet 8150 Series

상태: 유휴 상태

종류: HP LaserJet 8150 Series PCL

위치: HPLaserJet8150Series_copy_2

설명: ☐ 파일로 인쇄(L) ☐ 수동 양면지(X)

페이지 범위: ☒ 모두(A) ☐ 현재 페이지(E) ☐ 선택 영역(S)

인쇄할 페이지(G):

페이지 번호 및/또는 페이지 범위를 실표(.)로 구분하여 입력하십시오. 예, 1, 3, 5-12

인쇄 매수: 매수(C): 1

☒ 한 부씩 인쇄(T)

인쇄 대상(W): 문서

인쇄(R): 범위 내의 모든 페이지

인쇄할 페이지 수(H): **한 면에 인쇄할 페이지 수(H): 1페이지**

인쇄할 용지 크기(Z): 현재 설정된 용지

확대/축소: **잘된 사례**

확인 취소

인쇄

프린터: HP LaserJet 8150 Series

상태: 유휴 상태

종류: HP LaserJet 8150 Series PCL

위치: HPLaserJet8150Series_copy_2

설명: ☐ 파일로 인쇄(L) ☐ 수동 양면지(X)

페이지 범위: ☒ 모두(A) ☐ 현재 페이지(E) ☐ 선택 영역(S)

인쇄할 페이지(G):

페이지 번호 및/또는 페이지 범위를 실표(.)로 구분하여 입력하십시오. 예, 1, 3, 5-12

인쇄 매수: 매수(C): 1

☒ 한 부씩 인쇄(T)

인쇄 대상(W): 문서

인쇄(R): 범위 내의 모든 페이지

인쇄할 페이지 수(H): **한 면에 인쇄할 페이지 수(H): 2페이지**

인쇄할 용지 크기(Z): 현재 설정된 용지

확대/축소: **잘못된 사례**

확인 취소

잘된 사례

【문임 2】

연구기간	선택
1년 계획	
2년 계획	
3년 계획	

연구 계획서
(2007년도 신진교수연구지원사업)

연구과제명	국문	영문
*연구과제명은 온라인 신청시 입력한 과제명과 동일하여야 합니다(참고 후 삭제하고 작성하십시오)		

I. 연구계획

* 아래 사항은 참고하신 후 삭제하고 작성 하십시오.

※ 1. 연구계획은 "심사항목 및 측정지표"를 참조하시어 연구주제 및 연구내용에 맞게 자유 형식으로 기술함

※ 다년과제 또는 해외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의 필요성을 추가 기술함

※ 연구계획서(연구과제, 연구추진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 포함)는 15매 이내로 작성함. 단, 참고문헌 목록은 15매에 여상하지 않음.

※ 연구과제의 심사는 무기명심사(Blind Test)로 진행됩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자 및 연구 보조원을 알아 볼 수 있는 소속, 성명 등을 기재하지 마십시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참고문헌 목록에 있어 본인이 저자인 경우는 본인의 표기는 무방함

잘못된 사례

【문임 2】

연구기간	선택
1년 계획	
2년 계획	
3년 계획	

연구 계획서
(2007년도 신진교수연구지원사업)

연구과제명	국문	영문
*연구과제명은 온라인 신청시 입력한 과제명과 동일하여야 합니다(참고 후 삭제하고 작성하십시오)		

I. 연구계획

* 아래 사항은 참고하신 후 삭제하고 작성 하십시오.

※ 1. 연구계획은 "심사항목 및 측정지표"를 참조하시어 연구주제 및 연구내용에 맞게 자유 형식으로 기술함

※ 다년과제 또는 해외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의 필요성을 추가 기술함

※ 연구계획서(연구과제, 연구추진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 포함)는 15매 이내로 작성함. 단, 참고문헌 목록은 15매에 여상하지 않음.

※ 연구과제의 심사는 무기명심사(Blind Test)로 진행됩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자 및 연구 보조원을 알아 볼 수 있는 소속, 성명 등을 기재하지 마십시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참고문헌 목록에 있어 본인이 저자인 경우는 본인의 표기는 무방함

II. 연구추진계획

※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연차별로 따로 따로 추진계획을 작성하십시오

연차	연구추진내용	비고
2007. 7		
8		
9		
10		
11		
12		
2008. 1		
2		
3		
4		
5		
6		

※ 신청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작성

제출된 저술계획서는 재단이 심사를 위하여 PDF파일로 변환하게 되는데 수정하지 않은 채 잘못된 사례 형태의 파일을 탑재하시면 글자 및 그림이 겹쳐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니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파일탑재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저 술 계 획 서

[2008년도 인문저술지원사업]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 아래 사항은 참고하신 후 삭제하시고 작성하십시오.

※ 저술계획은 “심사항목 및 측정지표”를 참조하여 자유롭게 기술 하십시오.

※ 저술계획서(출판계획 포함)는 **A4 용지 5~10매** 내외로 작성하십시오. (참고문헌 목록은 용지 매수에서 제외)

※ 저술완성분량을 예상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저술완성원고 제출 시 당초계획분량을 초과한 경우는 무방하나, 부족할 경우 -10% 범위에 한하여 오차 허용

※ 저술계획서의 총 용량(Size)은 10MB 이내로 제한합니다.

※ 연구과제의 심사는 **무기명심사**(Blind Review)로 진행됩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파일명 및 파일내용에 신청자를 알아 볼 수 있는 **소속, 성명 등을 기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참고문헌 목록에 있어 본인이 저자인 경우 본인표기는 무방합니다.**

1. 저술계획

2. 출판계획

※ 출판사 선정기준 및 계획, 예상되는 출판 추진일정 등을 기술

3. 예상 저술 분량

4. 기타사항

【붙임2】

연구이력소개서

※ 본인 연구의 주요 경향 등을 업적 중심으로 기술 하십시오.

※ 1페이지 이내로 작성 하십시오.

【붙임3】

대 표 연 구 업 적 요 약 문

구분1)		발행년도		게재권호(집)	권 호(집)
연 번2)		학술지명			
제 목3)					
역 할4)			공동저자5)	명	

■ 초록(abstract) 또는 요약문 (특허의 경우 출원일, 출원국가 및 내용 등을 기재)

※ 업적요약문과 업적전문에 신청자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기재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성명, 소속 등)

※ 신청서 화면에서 대표업적으로 지정한 5편의 대표연구업적요약문 5편 중 2편은 전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종 출판파일 이외에 연구자가 소유한 원문파일 탑재 가능)

※ 대표연구업적 요약문 및 대표업적 전문의 총 용량(Size)은 10MB 이내로 제한합니다. 용량이 초과되는 경우 오프라인 제출 또는 용량 확대 등이 불가합니다.

-
- 1) 구분 : 논문, 저서, 역서, 학술지, 외국특허 중 택일하여 기재
 2) 연번 : 온라인 신청시 선택한 대표 연구업적에 대하여 각각 연번 부여하여 작성함 (1~5번)
 3) 제목 : 온라인 신청시 선택한 연구업적 제목
 4) 역할 : 주저자, 공동저자 중 택일하여 기재
 5) 공동저자 : 본인포함